

미국 지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집단소송 결과 제안된 합의 내용 통지문

본 통지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보내는 광고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a) 타입 1 또는 타입 2 당뇨가 있는 학생, 및
- b) 뉴욕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향후 입학할 예정인 학생.

수신: 현재 뉴욕시 교육청(DOE)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향후 재학할 예정이며, 학교로부터 당뇨병과 관련된 케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 해당 내용은 차터스쿨, 사립 학교 또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통지문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본 소송의 법적 절차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된 합의 내용("합의안" 또는 "합의 동의안")은 피고인들(교육청,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 학교 보건 담당실 및 뉴욕시)이 교육청 학교에 재학하는 당뇨 환우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은 특히 교육청 학교의 당뇨 환우 학생들을 위한 조정과 서비스 지원을 다룹니다.

본 합의안에 의한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권

-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서면 제출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 합의안의 공정성 관련 법정에서의 발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귀하가 집단 소송 구성원일 경우 귀하는 본 합의안의 조건에 귀속됩니다.**
-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은 본 통지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유효 기일이 있습니다.**

일반 정보

1. 본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3 명의 당뇨 환우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지명 원고)를 통해 미국 당뇨 협회(통합하여 원고)와 함께 뉴욕시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에서 당뇨 환우 학생들에 대한 보다 나은 케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명은 *M.F., et al.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et al.*, Civil No. 18-CV-6109 입니다.

원고측은 뉴욕시 교육청 학교들이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측이:

- 당뇨 환우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통학 및 학교가 후원하는 과외 활동을 포함한 교육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당뇨 관련 케어 및 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일명 섹션 504 회의의 일정을 잡거나 개최하지 않았고 섹션 504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학교 간호사, 보조교사, 보조원, 교사, 대리 교사 및 기타 교직원들이 당뇨 환우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혈당 모니터 사용, 글루카곤 투여, 또는 학교 간호사에 의한 인슐린 투여와 같은 적절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 당뇨 환우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당뇨 관련 케어를 받기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가 불필요하게 분리되어 소중한 수업시간을 놓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 견학, 학교 후원의 방과 후 활동 및 과외 활동, 학교 아침 급식 등에서 당뇨를 배려한 케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당뇨 환우 학생들을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전문을 포함한 본 소송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 확인:

<https://dralegal.org/case/m-f-v-new-york-city-department-of-education/>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당뇨 관련 케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 확인: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staying-healthy/diabetes>

2. 집단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원고들은 이러한 관행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본인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들(집단 구성원 또는 집단이라고 불림)을 대표하는 집단 대표로 법원에 의해 지명되었습니다.

3. 합의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고들과 피고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해당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원고들은 그들이 동의한 합의안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고, 또한 집단 소송 구성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집단 대표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은 합의를 하는 것의 이점, 지속적인 법정 절차에 의해 가능한 결과, 계속되는 법정 절차에 따른 비용과 기간, 그리고 항소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4. 누가 합의안 적용의 대상이 됩니까?

교육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향후 교육청 학교에 재학할 당뇨병을 갖고 있는 모든 학생들.

5. 본인 혹은 자녀의 포함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가 집단에 포함되고 합의안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에게 diabeteslawsuit@dralegal.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332) 217-2362 로 전화하십시오.

6. 본 합의에 따라 학생에게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본 합의안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합의안이 집단에게 제공하는 것

합의안이 승인되면 피고들은 특정 정책과 시행을 도입할 것입니다. 합의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법원이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해당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와 공동 전문가는 합의안의 명시 기간 동안 피고들이 합의안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준수하는지 추적 확인할 것입니다.

본 통지문은 합의안의 요구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 섹션 504 회의 일정 계획 및 개최, 섹션 504 계획의 작성 및 서명, 그리고 섹션 504 계획에 섹션 504 팀에서 결정한 모든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당뇨 환우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개선합니다. 섹션 504 계획은 당뇨 환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교육 및 관련 활동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당뇨 관련 케어 및 조정 내용을 설명합니다.
 - 다음 학년도에 동일한 학교로 복귀하는 당뇨 환우 학생:

- 모든 학생 집단 구성원:
 - 섹션 504 팀은 당뇨 환우 학생들을 위해 본 소송에서 특별히 개발된 템플릿 섹션 504 계획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학생에 대한 서비스와 조정 내용 및 훈련 대상자가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금 부족의 이유로 학생에게 필요한 조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섹션 504 계획은 가능한 경우 섹션 504 회의의 종료 시점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 당뇨 환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학교 간호사, 보조교사, 보조원, 교사, 대리교사, 버스 기사, 버스 승무원 및 기타 교직원 대상의 당뇨 케어에 관련한 트레이닝:
 - 모든 교육 자료는 미국 당뇨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자문을 받아 필요에 따라 갱신될 것입니다.
 - 간호사:
 - 모든 신규 간호사는 신규 교직원 간호사로 고용된 첫 날로부터 6 주 이내, 또는 계약 간호사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당뇨 관련 케어, 당뇨 학생의 권리, 섹션 504 계획 및 당뇨 관련 기술에 대한 초기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신규 간호사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배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 모든 간호사는 당뇨 관련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들이 돌보아야 하는 학생의 특정 필요와 관련한 학생 특화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Dexcom 6 연속 포도당 모니터(CGM)를 사용하는 학생을 맡은 간호사는 해당 특정 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 학년도가 시작된 후 진단을 받거나 입학하는 학생에게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 트레이닝이 임상적으로 적합한 경우,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할 것입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추가 트레이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뇨병 팀 간호사 또는 수퍼바이징 간호사가 동의할 경우 트레이닝의 필요성이 확인된 후 학교 수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교직원 간호사에게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필요성이 확인된 후 학교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계약 간호사에게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합니다.

- 모든 간호사는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당뇨 관련 케어에 대해 매해 재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 보조교사:
 - 섹션 504 팀이 당뇨 관련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즉시 대부분의 경우 학교 수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보조교사가 즉시 배치될 것입니다.
 - 모든 보조교사는 당뇨 및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트레이닝, 그리고 그들이 돕는 개별 학생을 위한 학생 특화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 재 트레이닝은 당뇨 환우 학생에게 계속하여 배정된 모든 보조교사에게 매해 제공될 것입니다. 추가 트레이닝은 필요에 따라 제공될 것이며 학부모는 추가 트레이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섹션 504 코디네이터:
 - 각 학교에서 학교 섹션 504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모든 학교 교직원들은 각 학교에서 5 월 및 6 월에 섹션 504 미팅이 있기에 앞서 4 월 15 일까지 완료되어야 할 재 트레이닝(섹션 504 코디네이터로 복귀하는 교직원 대상)을 포함한 섹션 504 계획에 관련한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 교육청 교사, 코치 및 당뇨 환우 학생을 담당하는 기타 성인:
 - 당뇨 환우 학생을 담당하는 모든 성인들은 당뇨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것이 학생의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 참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혈당 및 고혈당의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 저혈당 및 고혈당에 대한 대응 방법,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해야 할 대상, 당뇨 환우 학생들을 위해 고려되는 조정 내용을 포함한 레벨 1 의 트레이닝을 받을 것입니다. 이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의 필요성이 확인된 후 학교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실시될 것입니다.

- 충분한 인원의 성인은 레벨 1 트레이닝 내용에 추가하여 혈당 모니터링, 글루카곤 투여, 케톤 모니터링, 인슐린 투여 감독 및 당뇨 관련 응급 상황에 해야 할 일과 같은 추가 의무 내용에 대한 레벨 2 트레이닝(보조교사 또는 지정된 학교 교직원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1 명의 트레이닝을 받은 학교 교직원이 학교 등교일, 견학, 과외 활동(예를 들어, 아침 급식 프로그램) 또는 필요시 기타 학교 관련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의 필요성이 확인된 후 학교 수업일 기준 15 일 이내에 실시될 것입니다.

○ 버스 기사 및 버스 승무원:

- DMAF 를 소지한 교육청 학생의 통학을 담당하도록 교육청이 배치한 모든 성인은 상기에서 설명한 레벨 1 트레이닝과 글루카곤 투여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개학 첫 날 이전에 배정된 기사와 승무원의 경우 학교 개학 첫 날 이전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마친 후, 교육청은 가벼운 저혈당에서 중간 정도의 저혈당 증상, 심각한 저혈당과 고혈당의 일반적인 증상, 학생이 버스 승차 중 가지고 있도록 학부모가 제공한 처방된 글루카곤, 당뇨 관련 스낵, 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예, 학생 가방의 앞 주머니)에 관한 학생 양식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실행 안내서(quick action guide)"를 운전 기사와 승무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조정은 제한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또래와 반드시 최대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 시간을 놓치고 또래와 분리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견학, 학교 후원의 방과 후 활동 및 과외 활동, 학교 아침 급식 등에서 당뇨 환우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러한 활동 중 필요한 당뇨 관련 케어가 제공됩니다.

7. 합의안이 승인된 경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합의 동의안에 따르면 지명 원고들은 청구를 취하(포기)하고 집단을 대신한 특정 청구를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 지명 원고들과 집단은 합의안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당뇨 환우 학생들을 위한 조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시스템 차원의 명령 구제에 대한 모든 청구 내용을 취하합니다. 즉, 지명 원고들이나 집단 구성원 모두가 이 합의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시스템 전체 차원의 당뇨병 학생들을 위한 조정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지명 원고들이나 집단 구성원들은 장애인교육법 또는 섹션 504 조에 따라 발생하는 적절한 절차상의 청구나 금전적 청구와 같은 기타 개별적인 당뇨병 관련 청구를 취하지 않습니다.

8. 합의안은 지명 원고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합의의 일환으로, 피고들은 집단 대표 서비스에 대해 3 명의 지명 원고들에게 각각 \$5,000 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소송 관련 변호인단

9. 이 소송에서 저에게 변호인이 있습니까?

예.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집단 구성원인 경우, 비영리 로펌인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의 변호인이 본 소송만을 목적으로 귀하를 대리합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는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유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및 해당 변호인의 경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drlegal.org>

이들 변호인단은 귀하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변호인을 고용하고 싶으신 경우,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여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변호인단의 수입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해당 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합의 동의안에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소송, 합의 협상, 합의문에 대한 감시 및 집행을 위하여 해당 집단의 변호인이 피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비용 지불은 본 합의안에 따라 피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피고들이 시행하기로 동의한 정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안 거부

11.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어떻게 알립니까?

합의안은 발효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합의안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합의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것입니다. 합의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귀하는 “나는 M.F., et al. New York City Education Department of et al. 합의안을 거부합니다(I object to the settlement

in M.F., et al. New York City Education Department of et al.)"이라고 명시하여 모든 변호사(아래 이메일 주소 참고)를 복사하여 기입한 이메일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전화 번호, 합의안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 법원이 고려하기를 원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 해당 거부 의사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집단의 특정 하위 집단 또는 전체 집단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안 거부를 신청하고 온라인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 신청을 이야기하거나 별도의 발언 의사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하단 14 번 문항 참조).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 우편을 통해 모든 변호사에게 송부한 사본을 첨부하여 판사 법정 대리인에게 거부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Victor Joe
Courtroom Deputy of Judge Gershon
Victor_Joe@nyed.uscourts.gov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Torie Atkinson
Disability Rights Advocates
diabeteslawsuit@dralegal.org
655 Third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17

Chlarens Orsland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 General Litigation Division
corsland@law.nyc.gov
100 Church Street, Room 2-174
New York, NY 10007

귀하의 거부 신청은 늦어도 2023년 2월 27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집단 변호인, Disability Rights Advocates는 전자 사건 일람표에 해당 거부 신청을 하고
집단 구성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확인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청회

12. 법원은 언제 합의안 승인에 대한 결정을 합니까?

법원은 온라인 공청회를 **2023년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공청회에서 법원은 본 합의안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타당한지에 대해 숙고할 것입니다. 서면 작성된 거부 신청서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거부 신청 마감일 전에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판사는 공청회 발언 요청서가 적절히 제출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공청회 이후, 판사는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공청회 이후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라도 항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는 불확실합니다. 합의안이 승인되고 항소가 없을 경우, 피고들은 합의안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을 실행할 것입니다.

13. 제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Disability Rights Advocates의 변호인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판사가 본 사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비를 들여 본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귀하는 다음의 링크에서 Zoom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https://nyed.zoomgov.com/j/1600673093?pwd=VXBwTVFNZUg3bjZKUUFNV1EwTmIVZz09>

미팅 ID: 160 067 3093

패스코드: 090317

또는 다음의 전화 번호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646) 828-7666

미팅 ID: 160 067 3093

패스코드: 090317

공청회 날짜 및 시간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은 Disability Rights Advocates의 웹사이트 <https://dralegal.org/press/nyc-school-diabetes-settlement-fairness-hear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거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언하기 위해 공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감기한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면 거부 신청서를 발송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자비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참석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공청회에서 발언을 원하신다면 거부 신청서 또는 별도의 발언 의사 통지서 중 하나로 알려야 합니다.

14. 제가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발언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서의 발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아직 합의안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M.F.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Civil No. 18-CV-6109 (Ng) 소송에 출두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하여 모든 변호인을 복사하여 기입한 이메일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전화번호, 귀하가 공청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이유를 반드시 포함하고, 증언하기 위해 소환할 증인들의 성명 및 귀하가 공청회에서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목록을 기재하십시오.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 우편을 통해 모든 변호사에게 송부한 사본을 첨부하여 판사 법정 대리인에게 발언 의사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기 11번 문항에 기재된 이메일 및 우편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귀하의 발언 의사 통지서는 늦어도 2023년 2월 27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집단 변호인은 전자 사건 일람표에 해당 발언 의사 통지서를 신청하고 집단 구성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확인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15.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안이 승인된 후에는 해당 합의안의 향후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세한 정보

16. 본 합의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본 통지문은 합의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합의 동의안 전문에 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본 통지문이 합의안 전문과 상이할 경우, 합의안 전문의 문구가 더 정확합니다.

합의안 전문 사본은 Advocates for Children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ralegal.org/case/m-f-v-new-york-city-department-of-education/>또한 (332) 217-2362 로 전화하거나 diabeteslawsuit@dralegal.org 으로 이메일을 보내 본 합의안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거나, 본 합의안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예비 승인 동의 및 법원의 이전 결정을 포함한 기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해 법원 사건 일람표를 확인하시려면 법원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미국 지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 서기 사무실(the office of the Clerk of the Court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ew York 11201 을 방문하십시오.

본 합의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법원이나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귀하 또는 자녀가 당뇨 환우 학생이고 학교에서 자녀의 케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교육청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학교 보건 담당실의 섹션 504 프로그램 매니저
(212) 287-0354

504Questions@schools.nyc.gov

또는

자녀 학교의 보건 디렉터:

보건 디렉터 연락처의 최신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staying-healthy/diabetes> 에 방문하십시오.

ACCESS/79 학군(거치 학교, 79 학군 및 컨소시엄/국제학교/ 뉴욕시 아웃워드 바운드 학교)

보건 디렉터: Norberto Perez
이메일: NPerez4@schools.nyc.gov
전화번호: 646-413-5069
주소: 4360 Broadway, New York, NY 10033

북부 브루클린(13, 14, 15, 16, 19, 23, 32 학군)

보건 디렉터: Norberto Perez (I.A.)
이메일: NPerez4@schools.nyc.gov; BkNorthHealth@schools.nyc.gov
전화번호: 646-413-5069
주소: 4360 Broadway, New York, NY 10033

남부 브루클린(17, 18, 20, 21, 22 학군)

보건 디렉터: Juliana Felix-Barret
이메일: JFelixBarret@schools.nyc.gov
전화번호: 718-759-4921
주소: 415 89th Street, Rm 509, Brooklyn, NY 11209

브롱스(7, 8, 9, 10, 11, 12 학군)

보건 디렉터: Marleni Moreira
이메일: MMoreira3@schools.nyc.gov
전화번호: 718-828-4785
주소: 1230 Zerega Avenue, Bronx, NY 10462

맨해튼(1, 2, 4, 6 학군)

보건 디렉터: Magdalene Gomes
이메일: MGomes6@schools.nyc.gov
전화번호: 212-356-3867
주소: 333 7th Avenue, Rm 827 New York, NY 10001

맨해튼(3, 5 학군)

보건 디렉터: Stephanie Caloir
이메일: SCaloir@schools.nyc.gov
전화번호: 718-556-8383, 646-369-2502
주소: 715 Ocean Terrace, Rm A-309 Staten Island, NY 10301

북부 퀸즈(24, 25, 26, 30 학군)

보건 디렉터: Carin Jean Pierre-Destin
이메일: CPierre@schools.nyc.gov
전화번호: 718-281-3410
주소: Queens North 30-48 Linden Place, Flushing, NY 11354

남부 퀸즈(27, 28, 29 학군)

보건 디렉터: Edith Richards
이메일: ERichards7@schools.nyc.gov
전화번호: 718-348-2956
주소: 82-01 Rockaway Blvd, Rm 420, Queens, NY 11416

스태튼 아일랜드(31 학군)

보건 디렉터: Stephanie Caloir
이메일: SCaloir@schools.nyc.gov
전화번호: 718-556-8383, 646-369-2502
주소: 715 Ocean Terrace, Rm A-309 Staten Island, NY 10301

75 학군

보건 디렉터: Shona Gibson
Adam Breier
이메일: SGibson4@schools.nyc.gov
ABreier@schools.nyc.gov
전화번호: 212-802-1552
718-923-5087
주소: 400 First Avenue, Rm 715 New York, NY 10010

본 합의안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의 집단 변호인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에게 연락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ADVOCATES
diabeteslawsuit@dralegal.org
655 Third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17
전화번호: (332) 217-2362
<http://www.dralegal.org>

학교에서의 당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미국 당뇨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1-800-DIABETES (342-2383)
askada@diabetes.org
<http://www.diabetes.org/safeatschool>